

● 제29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폐회중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
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09. 0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1770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안 일 : 2020. 8. 12.
- 다. 회 부 일 : 2020. 8. 21.

2.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출이유

-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, 「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의거 민간(비영리법인)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써,
- 장애인의 학대,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·구제·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재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,
-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개요

-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·운영
- 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5.12.31.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1,460,642천원('20년 예산안 기준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(수탁기관 적정성심의)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 및 「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○ 추진 필요성

- 본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차별금지,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사례 관리,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담, 사법지원, 교육·홍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
-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지역 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임

3)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-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-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-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-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, 「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취지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¹⁾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²⁾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,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,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,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2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일반현황

가. 설립 목적 및 현황 관련

-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⁴⁾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시설로, 장애인의 학대,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·구제·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목적으로 하며,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〉

기관명	소재지	위탁기관	위탁기간	개관일
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	강남구 도곡로 416,	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	'18. 1.1~ 20.12.31	'14.2.13

-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4년 2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최초 설치되었으며, 현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·전환하여 운영 중임.

3) 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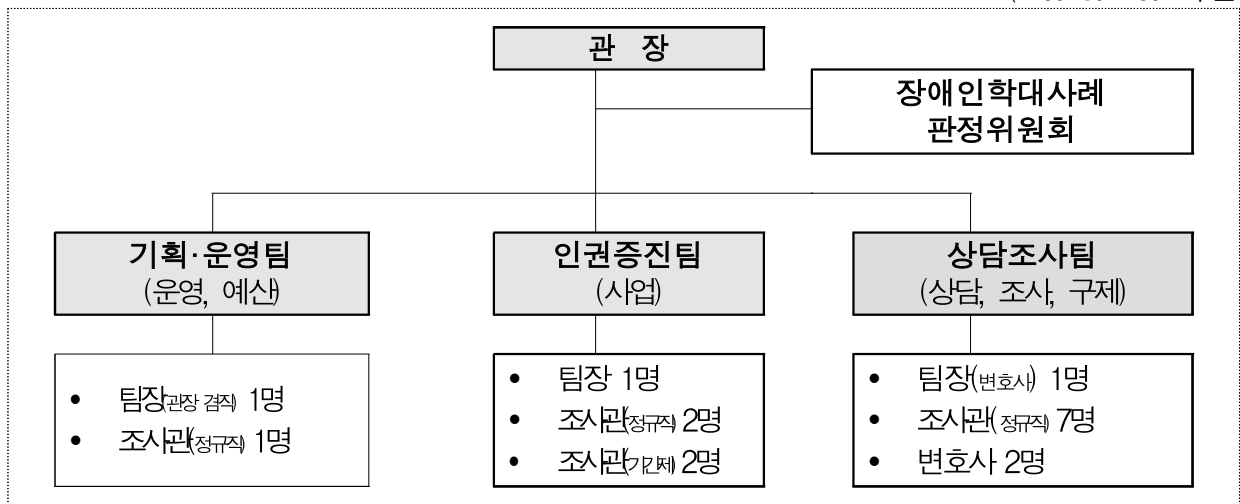
4) 제9조(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"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7. 7. 13., 2019. 7. 18.>

나. 조직 관련

-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팀로 구성되어 있으며, 현재 인력은 17명임.

〈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직도 〉

(’20. 3. 25. 기준)



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20년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발굴·상담·조사 실적은 2,954건(7월말 기준)임.

〈 인권침해 발굴·상담·조사 실적 〉

(단위 : 건)

합계	사건처리				사례지원			
	소계	신고접수	현장조사	응급보호	소계	긴급사례지원	모니터링	상담지원
2,954	563	348	207	8	2,391	21	114	2,256

-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3 종합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⁵⁾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삭제